

인천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
례안

인천광역시

인천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1
----------	----

제출년월일 : 2010. 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의결주문

인천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사유

- 가. 재단법인 인천장학회의 장학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 나. 재단법인 인천장학회의 발전과 건전한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전부개정하여 보완·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재단법인의 설립 근거 및 재단의 성격을 규정함
(안 제1조 내지 2조)
- 나. 장학회의 기금 확대와 다양한 장학사업 발굴을 위하여 기관·단체 및 인천광역시에서 위탁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3조)
- 다. 장학회 재산의 조성 항목을 명기하고 인천광역시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안 제9조)

라. 재단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재단을 관리 감독하고자 정관 변경 사항과 연간사업계획, 예산서 작성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하도록 함(안 제6조 2항, 안 제8조 1항)

마. 장학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공무원 파견 근거를 마련함
(안 제10조)

바. 재단법인 인천장학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
(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검토와 발췌사항

인천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단법인 인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재단법인 인천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재단법인 인천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업) 장학회는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우수 인재육성 및 장학금 지원 사업
2. 지방자치단체, 각종 단체 등의 장학금 수탁관리
3. 그 밖에 장학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4조(재산의 조성) 장학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장학회의 사업수익금
4. 이자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재산 운영 및 관리) 장학회는 기본재산에 대하여 수익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등에 예금으로 예치하거나, 국채·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 등을 매입하여 관리한다.

제6조(정관) ① 장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② 장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임원 등) ① 장학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는 시 공무원, 시 교육청 관계자,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한다.

③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장학회는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장학회는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장학금 지급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과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장학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장학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장학회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규정) 장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운영된 재단법인 인천장학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인천장학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진행 중이거나 이루어진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관련 법령 검토와 발췌 사항

관계 법령	<p><input type="checkbox"/> 민법</p> <p>○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p> <p><input type="checkbox"/> 지방재정법</p> <p>○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input type="checkbox"/> 지방재정법 시행령</p> <p>○ 제29조(공공기관의 범위 등)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으로 한다.</p> <p><input type="checkbox"/>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p> <p>○ 제2조(적용 범위)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